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28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배준영 · 송석준 · 김희정
김용태 · 김미애 · 김성원
우재준 · 한지아 · 윤한홍
한기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주민 생활 안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의 경우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 근거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우범 지역 점검 등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재해보상의 경우 의용소방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금을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체계지만, 자율방범대는 재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험가입비용

을 지원하는 체계로 의용소방대와 비교할 때 자율방범대의 재해보상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수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해보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2(재해보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

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